

통신판매업 []폐업 신고서 []휴업 []영업재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3 일	
신고인	상호			신고번호	
	소재지			전화번호	
	대표자의 성명 (서명 또는 인)			생년월일	
신고 항목	기간	년 월 일부터		년 월 일까지	
	휴업				
	폐업				
	영업재개				
신고 사유					
신고증 분실 · 훼손 사유		※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			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12 조제 3 항, 같은 법 시행령 제 17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 조에 따라 위와 같이 ([] 휴업 []폐업 []영업재개)를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 ※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 귀하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					
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(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하며,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 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수수료 첨부서류 ※ 폐업신고의 경우에 「부가가치세법」 제 8 조제 6 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면 같은 법 없음 시행규칙 별지 제 9 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					
처리절차					
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: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 · 특별자치도 · 시 · 군 · 구					